

[별지 제74호서식] <개정 2024. 2. 16.>

제 호			
이륜자동차튜닝승인서			
소유자	성명(명칭)		생년월일(사업자등록번호)
	주소		
이륜 자동차	번호		차대번호
	차명		원동기형식
	형식		배기량 또는 최고정격출력
승인 사항	항목	튜닝 전	튜닝 후
<p>「자동차관리법」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제2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튜닝을 승인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교통안전공단이사장 인</p> <p>○ 위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승인 내용과 같이 튜닝승인을 받은 날부터 45일(부득이한 사유로 튜닝검사를 연장하는 경우: 일) 이내에 해당 이륜자동차를 다음 장소에 제시(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지참)해야 합니다.</p> <p>※ 제시장소 :</p>			

33331-31011일

96.10.4 승인

210mm×297mm

(일반용지 60g/m<sup>2</sup>)